

자로시설 변경허가시와 동일하게 시설검사를 면제하며, 자체 안전관리가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주던 제도를 업무대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방사성물질폐기 시설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4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3) 원자력안전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생산활동이 촉진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 14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 영 교
장 관

○대통령령 제1904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을 “공직선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085호

부

과

2005. 9. 14. (수요일)

④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가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

로 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4항 단서 및 제5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단서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개정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681호, 2005.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2조)

(1) 법률에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은 시·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10인(각 분야별 2인)과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

천하는 자 1인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집·의결정족수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영 제3조)

(1) 종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은 읍·면·동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여 왔으나,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의 명칭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

(3) 국회의원이거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달리함으로서 선거사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조정(영 제4조제1호)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의 정기간행물은 물론 인터넷신문도 등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현직을 가지고 입

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함.

(3) 공직선거와 관련한 제한에 있어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과의 실질적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 14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박홍수
농림부장관

● 대통령령 제1904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분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8.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